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19-5 |
|--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. 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법률에 의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'보훈예우수당'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보훈개별법령에 의한 지원 대상 규정(안 제3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와 아울러 마포구민의 책무 추가 신설(안 제4조)
- 다.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, 보훈예우수당, 위문금,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라.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확대(안 제7조)
- 마.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 마련(안 제8조)
- 바. 위문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규정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, 제18조  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8. 12. 13. ~ 2019. 1. 2. (의견제출 없음)
- 2)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 1.15.)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
- 6) 비용추계서 1부
- 7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#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희생 · 공헌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  3. “국가보훈 관계법령”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  4. “보훈단체”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.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7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
- 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훈선양사업)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경일·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
4. 보훈관련 기념일·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·격려
5. 호국·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6. 구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

제6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
2. 국가를 위한 희생·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
3. 호국·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4.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
5.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6.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
7.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8. 보훈단체 운영

9.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

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④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를 준용한다.

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참전명예수당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

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

제9조(위문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, 호국·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제8조에 따른 수당 수급자는 위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|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|           |     |       | 처리기간<br>30일 |        |     |   |    |
|--|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|----|
| 사망자  | 성명        |     | 생년월일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|  | 주소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|  | 사망일자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|  | 지급대상유형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| 신청인  | 성명        |     | 생년월일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|  | 주소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|  | 지급대상자와 관계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|  | 입금계좌      | 예금주 | 금융기관명 | 계좌번호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| <p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 |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| <p><b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&lt;구비서류&gt;</td> <td>수수료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<br/>           2.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<br/>          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<br/>           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<br/>           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       </td> <td>없음</td> </tr> </table> <p>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br/> ※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·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<u>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</u>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</p> |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<구비서류> | 수수료 | 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<br>2.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<br>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<br>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<br>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| 없음 |
| <구비서류>   | 수수료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| 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<br>2.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<br>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<br>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<br>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| 없음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|    |

[별지 제2호서식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 |       |  |          | 처리기간<br>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훈<br>대상자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|  |          | 지급<br>대상유형<br>보훈예우수당 ( )<br>위문금 ( 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|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|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|  | 마포구 전입일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금<br>계좌                   | 계좌 번호 |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기관명 |  | 예금주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위문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**

|  |  |     |
|--|--|-----|
| <구비서류>   |  | 수수료 |
| 1.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<br>2.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|  | 없음  |

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·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**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희생·공헌자"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</li> <li>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</li> <li>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</li> <li>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</li> </ul> </li> <li>2. "국가보훈대상자"라 함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3. "국가보훈 관계법령"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</li> <li>4. "보훈단체"라 함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</li> </ul> <p>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희생 · 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</li> <li>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</li> <li>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</li> <li>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</li> </ul> </li> <li>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 ·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3. "국가보훈 관계법령"이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</li> <li>4. "보훈단체"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</li> </ul> <p>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</p> |

훈단체로 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7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

제4조(책무) ① 구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훈선양사업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훈선양사업)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경일·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
4. 보훈관련 기념일·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·격려
5. "호국·보훈의 달"에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6. 구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

제6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
2. 국가를 위한 희생·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
3. 호국·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사업
4.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1. 국경일·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
4. 보훈관련 기념일·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·격려
5. 호국·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6. 구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

제6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리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
2. 국가를 위한 희생·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
3. 호국·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사업
4.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
5.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6.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7.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8. 보훈단체 운영
9.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## 사업

제6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  
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④ 위로금 신청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유족이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  
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④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를 준용한다.

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참전명예수당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|  |  |
|--|--|
| <p>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.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</p> <p>제9조(위문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, 호국·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제8조에 따른 수당 수급자는 위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
|--|--|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18년 9월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4,044명 중 서울시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(서울시조례근거)함에 따라 약 2,500명이 수당지 대상으로 추정되며 고령으로 인한 연간 4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월 2만원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비용추계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2만원기준)

(금액:천원)

| 구분     | 1년차     | 2년차     | 3년차     | 4년차     | 5년차     | 합계        | 비고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예상인원   | 2,500   | 2,460   | 2,420   | 2,380   | 2,340   | 12,100    | 구비<br>100% |
| 1인지급액  | 240     | 240     | 240     | 240     | 240     | 1,200     |            |
| 금액(천원) | 600,000 | 590,400 | 580,800 | 571,200 | 561,600 | 2,904,000 |            |

### 4. 작성자

|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이서백 |
| 연락처    | 02-3153-8808    |